



제 2010-351 호

재발급번호-01

안 전 인 증 서

(주)에이스전자

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221번길 192-26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.

품 목

가스누설경보기 탐지부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Ex 301	DC15V 6.4W Ex d IIB T4	10-GA2BO-351

인 증 기 준

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

인 증 조 건

통전 중 커버개방 금지

2010 년 1 월 24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